지역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

한양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) 육성사업단(이하 "사업단"이라 한다)과 **성동구**(이하 "구"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「지역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」(이하 "협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하기로 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사업단이 보유한 우수인프라 및 기술을 기반으로 성동구 내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우수연구자 채용, 공동연구, 사업화 등 성공적인 산학협력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.

제2조 (상호협력)

사업단과 구는 본 협약의 체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.

1. 연구 및 기술정보 교류
2. 성동구 내 기업의 가족회사 가입 확대
3. 연구자와 가족회사 간의 분야별 인적 교류
4.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공동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5. 기타 양 기관의 산학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제3조 (주요 추진 사업)

양 기관은 산학협력 네트워크 활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.

1. 양 기관의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적, 물적 협력 프로그램 운영
2. 양 기관의 연구 및 기술정보 교류회 등 공동사업 추진
3. 기타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인적, 기술적 교류채널 구축

제4조 (신의성실의 이행)

사업단과 구는 본 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기로 한다.

제5조 (비밀유지)

사업단과 구는 본 협약서와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하며,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는 본 협약에 의한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. 또한 양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6조 (협약의 효력발생과 해지)

1. 본 협약의 효력은 사업단과 구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발효일로부터 3년 간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.
2. 본 협약은 사업단과 구가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.
3. 일방 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를 하여야 하며, 협약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발생한다.

제7조 (기타)

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단과 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한 후 사업단과 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1월 일

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) 육성사업단	서울특별시 성동구
단 장 이 영 무	구청장 정 원 오
_____	_____